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56 | 2026.11.2. (2026.10.26. ~ 2026.11.1.)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보건복지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성장 가능성과 기술력을 갖춘 유망 제약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후보물질 발굴부터 비임상·임상, 사업화·투자, 글로벌 진출까지 기업의 성장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7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❶지배구조(10%), ❷자금공급(35%),❸채무조정(35%), ❹사회적배려(10%), ❺비금융서비스(10%) 등 5개 부문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입법(행정)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자로 인정되는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의 요건을 정하여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지방 중소병원의 내실화를 유도하려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지원이 가능한 대출의 범위에 유동화전문회사등을 통한 대출,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준공 후 임대주택등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을 포함하고, 신용보증 지원이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상법」상 가맹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영업을 지속하기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부과를 제한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2인)」**,

자진신고자에게는 시정조치의 면제를 허용하지 않고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 재결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1인)」**,

5년간 2회 이상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등록·허가·인가·면허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법정손해배상의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거나 정보주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내국인이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반도체 등 분야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2인)」**,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 분야를 수소를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하고, 우주항공, 로봇, 방위산업 및 조선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3인)」**,

국방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과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하여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국방반도체 사업자에 대한 연구인력 고용 및 생산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해저통신케이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가·허가 등의 일괄처리를 규정하며, 손실보상의 기준마련 및 긴급복구 시 사전절차 등을 생략하고, 해저통신케이블시설 특구를 지정하는 등 해저통신케이블에 관한 새로운 법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해저통신케이블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의겸의원 등 13인)」**,

직접생산 확인 취소를 의무적 처분에서 재량적 처분으로 전환하여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 제품 범위 및 직접생산 신청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5인)」**,

해외에 진출한 국내법인, 현지법인으로 설립한 해외법인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해외건설 촉진법」에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4인)」**,

데이터센터를 건축물의 용도상 별도의 용도로 구분하고, 데이터센터가 주거환경·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11.2.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가 개최되며, **<정무위>, <과방위>, <문체위>, <농해수위>, <예결위>** 등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육성 방안」 발표(보건복지부) ····· 8
- 「포용금융 종합평가체제 도입방안」 발표(금융위원회) ····· 9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1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 11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고용노동부) ····· 11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농림축산식품부) ····· 12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해양수산부) ····· 12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 13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 13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4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 1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 15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5인) ····· 15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2인) ····· 1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2인) ····· 16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1인) ····· 1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1인) ·····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 17
- 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 18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 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2인) ····· 19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 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1인) ····· 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 2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 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3인) ····· 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3인) ····· 22
-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 23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2인) ····· 23
- 해저통신케이블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의겸의원 등 13인) ····· 24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 24
- 원전 인공지능의 개발 촉진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진숙의원 등 11인) ····· 25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 25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 2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5인) ····· 26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 27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 ····· 27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 28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1인) ····· 28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 29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6인) ····· 2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 30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4인) ····· 30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 3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 31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 3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 32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 32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5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방송통신(TMT)]** 공정위, 「인공지능(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안) 의견청취 실시
- **[국방획득/방위산업]** 군사기밀 관련 압수수색, 방산기업은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군사기밀 등 관련 사건의 압수수색 대응 및 실무적 시사점-

- **[건설/부동산]** 분양형 토지신탁사업의 공사 중단으로 위탁자가 신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및 16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탁사를 대리하여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한 사례
- **[건설/부동산]**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지급책임이 제한된 판결에 기한 부동산신탁회사 상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사건에서, 즉시항고를 통해 제1심의 등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 **[건설/부동산]** 세종 건설클레임센터 Monthly Insight 10월호
- **[중국]** '차이나 이노베이션'의 작동원리와 한국 기업을 위한 시사점
-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기업지배구조 제도·규제 동향 MONTHLY
- **[형사]** 방위산업기술·군사기밀 유출 수사 사건에서 구속영장 기각 및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고, 증거은닉 혐의에 대하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
- **[지식재산권]** 실시간 스트리밍 플랫폼의 해외 음악저작권 침해 관련 국내 저작권 관리단체의 소송적격 및 배상책임을 부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환경]** 통합허가 대상업종 확대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
- **[건설/부동산]** 월간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 **[금융]** 월간 기업·금융분쟁 뉴스레터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10. 14. - 2026. 10. 27.)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따른 위임만으로는 '5% 룰'상 공동보유자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어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육성 방안」 발표** - 성장 가능성 높은 제약바이오 중소벤처기업 매년 50개 선별, 최대 5년간 집중 지원 - R&D 전담은행 통해 3년간 600억원 투자 및 900억원 규모 사업화 보증 - AI·신기술, 창업·투자, 지역 인프라 및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해 제약바이오 혁신생태계 강화	2026-10-29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음

이번 대책은 성장 가능성과 기술력을 갖춘 유망 제약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후보물질 발굴부터 비임상·임상, 사업화·투자, 글로벌 진출까지 기업의 성장 전 과정을 중기부와 복지부가 함께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힘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두 부처가 공동 발표한 「제약바이오벤처 전주기 협업 방안」과 9월 17일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 애로 등을 바탕으로 다음의 4대 전략을 마련하였음

①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200개 집중 육성
- 성장 가능성과 기술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으로 매년 50개 사씩 선정하여 2030년까지 총 200개 사를 육성할 계획
- 신약개발 20개 사, 의료기기·디지털헬스 20개 사, 바이오소재·생산 기술 10개 사 등 3대 분야에서 복지부·중기부가 공동으로 유망기업을 발굴·선정
- 선정기업에는 성장디렉터를 1대1로 매칭하여 기업별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2년간 R&D·임상·사업화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

②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사업화까지 단절 없는 성장경로 구축
-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신약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 기술개발부터 임상·사업화까지 연계 지원
- AI 신약개발 모델의 검증·사업화를 지원하고, 공공 의료·바이오데이터 활용을 확대하여 AI 기반 신약개발과 의료기술 혁신을 촉진
-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동물시험 감축 등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응하여 오가노이드·장기칩 등 동물대체시험 기술과 의료 AI 고도화를 위한 신규 R&D를 추진

③ 창업·상생·투자·인프라를 연결한 혁신생태계 구축
- 병원·대학의 우수 연구성과가 창업으로 이어지고,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
- 병원 연구자 창업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이전조직 등을 활용하여 병원·대학의 연구성과가 창업·사업화로 이어지는 경로를 확대

- 글로벌 제약사·대기업의 기술 수요와 유망 스타트업을 매칭하여 기술검증·공동 R&D·투자·사업화로 이어지는 개방형 혁신을 강화

④ 글로벌 가치사슬과 연결해 해외시장 진출 확대

- 국내 유망기업이 기술개발 초기부터 글로벌 제약바이오 가치사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을 지원
- 글로벌 제약사·투자기관·현지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임상·인허가·시장 진입 등 기업별 해외 진출 전략 수립을 지원
- 해외 제약사의 기술 수요와 국내 유망기업을 매칭하는 수요 기반 국제공동 R&D를 신설하여 후보물질 발굴부터 비임상·임상 진입까지 연계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하여 부처별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유망기업 공동 발굴 → 성장전략 수립 → R&D·임상·사업화 패키지 지원 → 투자·보증 → 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협업형 기업 육성 모델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200개 육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금융위원회	**「포용금융 종합평가체제 도입방안」 발표** - 17개 국내은행 대상, ❶지배구조(10%), ❷자금공급(35%), ❸채무조정(35%), ❹사회적배려(10%), ❺비금융서비스(10%) 5개 부문으로 평가 - 평가결과 대외 공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가중·감경(최대 20%),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감경, 경영실태평가 반영 등을 통해 실효성 확보	**2026-10-28**

금융위원회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방안」**을 발표하였음

그간 정부가 '포용금융 대전환'을 역점 추진하는데 발맞춰 금융권도 중·저신용자 금융공급 확대, 채무조정 활성화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음. 특히, 5대 금융지주는 향후 5년간 포용금융에 70조원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올해 상반기 약 11조원 이상을 공급하는 등 계획을 충실히 이행 중임

그러나 여전히 포용금융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금융권 전반에 자리잡고 있어, 단순한 실적점검이나 모니터링만으로는 지속적인 포용금융 추진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힘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하여 금융회사가 포용금융을 경영체계에 내재화하고 지속 확대하도록 실질적 유인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임

평가대상은 17개 국내은행으로, 자산규모나 영업형태에 따라 유불리가 사전에 결정되지 않도록 대형은행(가군), 중소형은행(나군), 인터넷은행(다군)으로 분리하여 군별 상대평가를 실시함. 금융감독원이 평가실무를 담당하고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회가 결과를 심의·확정함. 매년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3월 중 결과를 발표하며, 내년부터는 제2금융권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임

평가지표는 ❶지배구조, ❷자금공급, ❸채무조정, ❹사회적배려, ❺비금융지원 총 5개 부문으로 나누어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노력 전반을 평가함c

평가결과는 군별로 S·A·B·C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대외 공개하여 기관간 경쟁을 통한 자율 개선을 유도함. 또한, 평가결과 우수(S)·양호(A), 미흡(C) 은행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최대 20% 가중·감경하고, 우수(S)·양호(A)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10% 이내로 감경하며, 평가결과를 경영실태평가에도 반영하여 실질적인 인센티브·페널티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고 밝힘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7-01-01 시행 예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업인수목적회사를 제외한 모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자 등으로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공기관, 소기업 및 금융회사 등도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10-29 시행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회원의 권리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1595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 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전자총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소속 임원에 대한 재산 공개 절차·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2027-04-28 시행 예정

사업주 또는 도급인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근로자 등이 작업중지를 요구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를 추가하는 한편,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1년간 산업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3명 이상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개선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7-04-28 시행 예정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사항을 명확히 하고, 농어업경영정보의 확인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며, 농어업경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 및 요건을 정하는 한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 및 청년 농업인의 공동농업경영체 참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경영정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7-04-28 시행 예정

마리나업 등록 등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등은 마리나항만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마리나선박 승선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음주 및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마리나선박을 운항한 등록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며, 기상상태 악화 등의 경우에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 대하여 운항구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마리나선박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10.28. ~2026.12.10.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일정요건을 충족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2040호, 2026. 9. 29. 공포, 2027. 3. 30.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인정되는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의 요건을 정하여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지방 중소병원의 내실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자로 인정되는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의 범위로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적합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며,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춘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으로 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전화: 044-204-7576, 팩스: 044-203-7679)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10.28. ~2026.12.10.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① 여성기업 확인 신청 유형 세분화 (안 제15조제1항, 제16조제4항, 별지1호서식)
- 확인서 발급 후 상호명·대표자 등이 변경되어 신청하거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신청 방법을 정하고 별지1호의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서식을 변경함

② 여성기업 확인 소요 비용에 대한 수익자부담 근거 마련 (안 제15조제5항)
- 여성기업 확인 신청업체의 증가에 따른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 확대를 위해 확인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여성기업 확인 신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③ 여성기업 확인 후 사후관리 권한 일부 변경 (안 제18조제2항)
- 여성기업 확인 후 여성기업 요건 유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협회로 변경함

④ 여성기업 확인서 처리기간 연장(안 별지1호서식)
- 여성기업 확인 신청의 처리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변경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전화: 044-204-7458)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10.28. ~2026.12.11.

24년 11월말 중부지역 중심으로 11월 기준 117년 만에 역대 최다 적설량을 기록하였으며, 이로 인해 시설물 붕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음. 특히, 구조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창고, 축사 및 비가림막, 차양시설 등의 3층 미만 가설건축물이 주로 붕괴하여 폭설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구조기준 적용 범위 확대하여 폭설·습설에 대비하려는 것임

① 가설건축물 구조안전 강화
- 공공이 이용하는 시장 아케이드, 도로 차양시설 및 그 외 가설건축물 중 조례로 정한 건축물은 구조안전확인 대상에 포함
- 구조안전을 받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회 이상 연장 시 구조안전 확인 후 연장

② 축사 등 폭설 취약 건축물 구조안전확인 대상 포함
- 200㎡ 이상의 축사, 창고, 작물 재배사 구조안전확인 대상 포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전화: 044-201-4985, 팩스: 044-201-5576)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10.22. ~2026.12.01.

주택공급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지원이 가능한 대출의 범위에 유동화전문회사등을 통한 대출,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준공 후 임대주택등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을 포함하고, 신용보증 지원이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며, 신용보증 한도를 상향**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26.8.13.)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전화: 02-2100-1696, 팩스: 02-2100-1699)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2026-10-27 발의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가치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EU, 일본 등 주요국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 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법정공시의 형태로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논의가 미비하여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국제적 정합성, 국내 기업의 수용 가능성 및 국내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하려 함. 아울러 공시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등록과 인증업무의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한편, 이 법 시행일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손해배상과 과징금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정보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5인)	2026-10-27 발의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급사업자 중 하도급대금 연동이 반영된 계약 비율이 높지 않아 여전히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정책자금의 융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자발적인 참여와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3조의6제2항 신설 등)**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2인)	2026-10-27 발의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의 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상법」상 가맹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영업을 지속하기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부과를 제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상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권한 보호를 위한 것이나,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사실 및 이의제기 관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묵시적 계약갱신 절차를 보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약갱신을 방지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2인)	2026-10-28 발의

최근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개별 금융투자상품이 자본시장 전체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거래소의 개장시간 변경·시장 휴장 등에 대한 조치권과 차입공매도 제한에 대한 조치권,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투자자 재산의 관리·영업 등에 대한 조치권은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투자상품 자체에 대한 긴급조치권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일례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대해 매일 배수조정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하도록 지침을 발표하였고, 이에 자산운용사는 수익자총회 등의 절차 없이도 상품 구조를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었음. 반면 우리나라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유사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상품이 자본시장의 변동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416조)**

정무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1인)	2026-10-28 발의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금융시장 불안과 금융중개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부실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과 원활한 금융중개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를 위해 **부보금융회사가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자 함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지원받은 부보금융회사 등의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1인)**	2026-10-28 발의

현행법은 사업자의 가격을 결정·유지하는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면서,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을 위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교육청이 발주한 교육용 태블릿 PC 가격의 담합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반복적인 담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담합 억지력을 강화하고 경쟁을 회복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자진신고자에게는 시정조치의 면제를 허용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에 교육청을 포함하는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 재결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복적인 담합을 근절하고 시장의 경쟁질서를 회복하고자 함 **(안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등)**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2인)**	2026-10-28 발의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음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유사 또는 동일한 공동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5년간 2회 이상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등록·허가·인가·면허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함 **(안 제43조의2)**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2026-10-29 발의

최근 디지털자산시장은 분산원장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투자·거래뿐만 아니라 자산의 이전·유통, 지급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연계되는 새로운 금융·경제 영역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음. 이에 주요국은 디지털자산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면서 이용자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및 금융시장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디지털자산업의 진입규제, 발행·공시, 거래지원 및 시장운영, 지배구조·내부통제·건전성, 이용자재산 보호와 사업자 부실정리,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의 준비자산·상환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규율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함. 사업자의 장애·부실, 외부 수탁자의 업무중단, 무인가·미등록 영업 및 외국 발행 디지털자산의 국내 유통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도 필요함

이에 **디지털자산의 개념과 경제적 실질에 따른 적용원칙을 정립하고, 디지털자산업을 매매·교환업, 중개업, 거래지원업, 이전업, 보관관리업,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으로 구분하여 기능과 위험에 따른 인가·등록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배구조·내부통제·건전성·업무연속성, 거래지원 심사·시장안정·이상거래 감시 등을 규율하고, 이용자재산의 귀속·구분관리·도산절연 및 직접 반환·이전청구권을 보장하며, 책임이행재원·이용자보호기금과 사업자 부실 시 관리인 및 계약·자산 이전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일반 디지털자산에는 발행인 판단, 발행설명서·변경공시 및 공시책임을 적용하고,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에는 원화기반 발행업 허가, 발행잔액 이상의 준비자산, 직접 액면상환, 상환관리인 및 외국 발행인의 국내대리인·국내 상환재원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아울러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조사·과징금·형사제재와 피해구제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의 감독·위기대응,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디지털자산시장의 공정성·투명성·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2026-10-30 발의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정보주체가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이후 상한액이 그대로 유지되어 억지력이 약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관한 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집중된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정손해배상의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거나 정보주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유출등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

재정경제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2026-10-26 발의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민간의 투자금액이나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최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확산과 함께 국내 영상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 강화 등으로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유통업계의 경쟁 여건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작 단계뿐만 아니라 제작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는 통신비, 클라우드 및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이용료, 앱 마켓 수수료, 해외 유통을 위한 광고·홍보·현지화 비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내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영상콘텐츠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데 지출한 유통비용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영상콘텐츠의 유통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9 신설 등)**

재정경제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2인)	2026-10-26 발의

현행법은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 세제지원은 투자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투자금액에 비해 생산 규모가 큰 산업은 실제 국내 생산활동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자동차 등 생산집약적 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보다 고용을 기반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투자 중심의 현행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기 어려우나, 국내에서 이루어진 생산 그 자체에 연계하여 지원하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내국인이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반도체 등 분야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함으로써,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재정경제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2026-10-27 발의

현행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2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아 투자자산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 금액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의 투자자산 간 과세체계와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크지만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가상자산 투자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해외거래소·개인지갑 등의 가상자산 취득가액을 검증할 과세 인프라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과세 시행 전 제도 보완을 위하여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손실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 과세 시행일을 2년 유예**하려는 것임

재정경제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1인)	2026-10-27 발의

현행법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는 기업 규모 등에 따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5까지(반도체 분야는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30까지), 일반 시설에는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특정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원유 공급원 다변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대체 공급원의 원유는 기존 원유와 성상이 다를 수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설비 보강 및 공정 개선 투자가 필요함에도, 해당 시설은 현행법상 일반 시설로 분류되어 낮은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어 관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유 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대체 원유 처리를 위한 설비투자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4) 신설)**

재정경제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2026-10-28 발의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와 웹툰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간행물과 전자출판물의 제작을 지원하는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출판콘텐츠는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뒷받침하고 영상·웹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원천으로 활용되는 기반 자산임. 또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문적인 편집과 검증을 거친 출판콘텐츠는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되는 신뢰도 높은 언어 자원으로서 그 가치가 크게 높아지고 있어, 저작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양질의 지식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출판 분야의 지속적인 창작과 제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작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창작 기반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행물 및 전자출판물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기본공제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비율을 추가공제**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제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영상콘텐츠 및 웹툰 세액공제와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하며, 최저한세와 이월공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9 신설 등)**

재정경제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2026-10-28 발의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범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임

노선버스 운송사업은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특성이 있고, 자산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요구되는 버스차량·차고·교육훈련시설 등 운송부대시설 등의 비유동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성이 있어 자산만 물려받는 형태의 '편법 상속'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업종임

노선버스가 국민에게 제공되는 기초생활교통수단인만큼 노선버스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전국에 걸쳐 있어, 가업상속공제 적용업종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될 경우 막대한 상속세 재원 마련 과정에서 노선버스 운송업체의 노선운행 축소 또는 승계 포기, 폐업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운송서비스 기반이 약화되고, 국민의 이동권 제약으로 교통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원활한 가업의 상속을 지원하며, 노선버스가 국민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2)**

재정경제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3인)	2026-10-29 발의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하여,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급변하는 국제 경제안보 환경과 산업구조의 전환 속에서 우주항공, 로봇, 방위산업 및 조선 분야 또한 국가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에너지 분야의 경우 수소에 한정되어 있어, 수소 외의 미래형 에너지 분야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 분야를 수소를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하고, 우주항공, 로봇, 방위산업 및 조선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1항제2호)**

재정경제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3인)	2026-10-29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원활한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승계 관련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 기업을 승계하거나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기업의 지배지분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과세특례는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영자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으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도 원활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기업의 계속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특히 근로자기업인수는 기업과 고용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축적된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승계할 수 있는 방식임에도 근로자의 인수자금 조달능력에 한계가 있어 실제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3자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승계하는 경우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승계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기간 감면하는 한편, 근로자기업인수에 대해서는 주된 양도자 및 공동양도자의 양도소득세의 감면·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장기근속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기업인수를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승계와 고용의 계속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의8 및 제30조의9 신설 등)**

국방위원회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1인)	2026-10-29 발의

국방반도체는 무기체계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부품이나, 낮은 수익성과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 전용 팹 등 생산기반 부족으로 국산화율이 1.1%에 불과하고 98.9%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불안과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방반도체의 연구개발부터 설계, 실증, 제조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현행법이 제정되었으나, 산·학·연·관·군이 집적하여 설계, 시험, 실증, 생산을 연계할 클러스터 조성과 연구인력 확보, 국방반도체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할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방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과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하여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국방반도체사업자에 대한 연구인력 고용 및 생산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의2 및 14조의3 신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 신설 등)**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2인)	2026-10-26 발의

현행법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법률에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등록면허세는 일정한 등기·등록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적인 제조·생산용 기계·설비는 별도의 과세대상 또는 등기·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도 생산공정에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되어 생산설비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

그런데 선박의 건조·수리 등에 직접 사용되는 해상크레인은 실질적으로 선박의 제조·생산을 위한 필수 설비임에도 그 구조와 형태에 따라 선박으로 분류·과세되어 다른 제조업 생산설비와 과세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생산설비 해당 여부를 다투는 불필요한 조세분쟁과 이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는 실정임

이에 **선박의 건조·수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설비인 해상크레인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를 비과세로 하는 등 지방세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다른 제조업의 생산설비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조선산업의 설비투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10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해저통신케이블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의겸의원 등 13인)

2026-10-27 발의

해저통신케이블은 국가 및 지역 간 경계를 초월하여 연결을 제공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가상서버·빅데이터·사물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음.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글로벌 광역통신망(WAN) 사용량이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저통신케이블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는 상황임

그런데 해저통신케이블을 설치·운영하려면 개별법상 인허가를 별도로 취득해야 하고, 해저통신케이블 손상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따라 긴급복구에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저통신케이블 설치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를 조정할 기구가 없는 등 국가차원에서 해저통신케이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해저통신케이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가·허가 등의 일괄처리를 규정하며, 손실보상의 기준마련 및 긴급복구 시 사전절차 등을 생략하고, 해저통신케이블시설 특구를 지정하는 등 해저통신케이블에 관한 새로운 법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핵심 인프라인 해저통신케이블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2026-10-30 발의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실을 신고나 삭제요청 등으로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

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신고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피해자 신상정보의 유통은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와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신고자 정보의 유출은 신고자의 권익 침해는 물론 신고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피해자 신상정보를 추가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삭제요청 등 신고받은 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며,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5, 제22조의6제1항, 제27조제1항제3호의4,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96조제6호의3)**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원전 인공지능의 개발 촉진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진숙의원 등 11인)**	2026-10-30 발의

현재 원전 분야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원자력안전법」 등 개별 법률에서 분산되어 규율하고 있어 원전 인공지능의 개발·실증·도입·운영 전 과정을 포괄하는 별도의 통합적인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원전의 안전상 중요도에 따른 영향등급 분류, 안전성 입증자료, 검증결과 및 인허가 절차를 일관되게 연계하는 원전 특화절차가 미흡하고, 기존 원자력 안전규제만으로는 데이터 및 모델관리, 독립적 검증, 운영 중 성능감시, 이상사건 대응 등 인공지능의 전 수명주기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고, 개발자, 공급망사업자, 원전운영자 등 원전 주체 간 안전관리 책임과 정보제공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원전 인공지능의 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원전 인공지능의 연구개발, 데이터 확보, 실증, 안전성 검증 등이 분절될 경우 기술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안전성을 새롭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원전 인공지능의 사업화와 현장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원전 인공지능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원자력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전 인공지능에 특화된 개발·지원 및 안전관리를 하나의 법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2026-10-26 발의

현행법은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출판 관련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출판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출판문화산업은 저임금 등으로 숙련된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고, 영세 출판사가 많은 산업 구조상 출판종사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 우대 근거를 마련하며, 표준보수지침의 마련·보급, 근로환경 개선 등 지원,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출판 분야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우수인력의 유입 및 정착을 도모하여 출판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2제2항 및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 신설 등)**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2026-10-26 발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은 문화·산업적 활용 가치가 매우 높으나, 현행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의 적용이 행정규칙(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상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 등이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저작재산권을 전부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자유이용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 등에서 공공저작물을 보다 자유롭고 폭넓게 활용하는 데 법적·기술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공누리 적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공공기관 등의 공공저작물 개방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시 출처 명시 면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공공저작물을 더욱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려는 것임. 아울러 **이용활성화 시책 대상을 확대하고 기관별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5인)	2026-10-27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취소 제품 범위 및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신청 제한기간

을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위반행위는 위반의 내용과 정도, 고의성 및 반복성 등에 따라 그 성격과 영향에 차이가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취소 여부 및 범위가 법률에 정해져 있어 개별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한 처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일시적이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어 해당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직접생산 확인 취소를 의무적 처분에서 재량적 처분으로 전환하여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 제품 범위 및 직접생산 신청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관련 유형과 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생산 확인 취소 및 제재 처분이 위반행위에 상응하여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제2항 및 제5항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2026-10-27 발의

현행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 확대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무역 진흥·제한 조치,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수출입거래, 수출입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급망 재편 등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외국과의 통상 관련 조치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뿐만 아니라 그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과의 무역 또는 통상 관련 조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으로서 연쇄적인 경영상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기업을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 세제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여 국가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의6부터 제32조의8까지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	2026-10-28 발의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에서 원재료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품대금의 10% 미만인 원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하는 수탁기업은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실질적인 부담이 크지만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등 주요 원재료의 기준이 획일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납품대금 연동제가 수탁·위탁거래 상의 다양한 원가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 가지 이하의 원재료 비용의 합계가 납품대금의 20% 이상인 경우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조)**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2026-10-28 발의

최근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을 배달앱을 통하여 구매하는 소비자의 상당수가 조리음식의 위생관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소비자가 안심하고 조리음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음식점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를 하여야 하나,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등록된 음식점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음식점에 대하여는 통신판매 중개 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음식점이나 영업정지 중인 음식점 등에 대하여는 통신판매 중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46조의3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1인)	2026-10-27 발의

현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는 경우 등에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가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과징금 최고액은 3억원으로,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의 위반행위 중대성에 비해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률 중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등에서는 사업체의 매출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제도를 개선한 바 있음(「대기환경보전법」: 2020. 12. 29.,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2019. 11. 26. 개정)

이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금액을 사업장의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안 제23조제1항·제3항)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2026-10-27 발의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통해 지정폐기물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사업장폐기물 종류와 발생량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내 폐기물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폐기물을 추적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전반적으로 상향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분석결과가 지정폐기물인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17조의3, 제68조)**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6인)	2026-10-28 발의

폐기물을 골재 등 관련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품으로 제조한 것을 성토·복토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인·허가나 신고 등의 행정절차 없이 인·허가된 토목·건축공사 등에 재활용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성토·복토 용도의 폐기물 재활용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의 사전 확인 및 사후 관리 절차가 미흡하여, 관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재활용을 가장한 불법 성·복토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폐기물 또는 재활용 골재·토사 제품을 성토재·복토재로 공급·운반·사용하는 과정에 대한 계획 승인, 인수·인계 내역 입력, 시작·완료 보고 등의 관리체계를 두고 있지 아니하며, 성토·복토 재활용을 완료한 후 관할 행정기관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음

이에 **폐기물 또는 재활용 골재·토사 제품을 성토·복토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폐기물 또는 재활용 골재 공급계획 제출·승인토록 하고, 재활용 골재도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성토·복토 대상부지 관할 행정기관에 성토·복토 관련 사항을 보고토록 하고, 재활용을 가장한 불법 성토·복토 행위자의 경우 불법 매립 행위자와 동등한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2026-10-26 발의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재개발사업의 경우 각각 조합설립인가 후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에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양도인이 세대원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 양도인 측의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그 결과 무주택 세대가 거주할 목적으로 양수하거나 근무·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세대원 모두가 이주하기 위하여 양수하는 경우처럼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 거래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되어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주택 세대가 실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양수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공급받는 주택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세대원 모두가 해당 사업구역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주택을 양수하는 경우 등에는 그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 거래를 정상화하려는 것임 **(안 제39조제4항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4인)	2026-10-26 발의

해외건설 현장에서 우리 기업 간의 분쟁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내국인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현행 법체계로는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해외에 진출한 국내법인, 현지법인으로 설립한 해외법인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해외건설 촉진법」에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가 기업 간 조정을 지원하고자 함

아울러 최근 해외건설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능동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상 한계가 있어 **법 개정을 통해 해외건설 관련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이를 통해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유도하고자 함 **(안 제30조 및 제32조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2026-10-27 발의

현행법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면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신청에 따라 그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역량 있는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역량 있는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계하는 방식을 통하여 설계자의 지위에서 공사감리자로 지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특례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운용되어 부실공사 방지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질서를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 지정 특례를 폐지**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제2항제2호 삭제)**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2026-10-28 발의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방안을 발표하였음. 이에 따르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대책 발표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착공하는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발표하였음

그러나 해당 대책 발표일 전에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아직 착공하지 못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신속한 착공을 통해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에도, 대책 발표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도 아직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정비사업을 조기착공 지원 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사업시행자의 신속한 착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조기착공 지원 사업으로 지정된 정비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신고**를 하도록 하여 지원이 실제 조기착공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82조의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2026-10-30 발의

최근 인공지능산업의 성장으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거지역이나 학교·공동주택 등 생활환경과 밀접한 장소에 데이터센터가 입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데이터센터는 24시간 가동되는 특성상 냉각설비의 소음·진동과 발열, 전자파 및 화재 위험 등을 수반하므로 주민의 우려와 갈등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의 세부 용도로 분류되어 있어, 입지 단계에서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음. 또한,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운영되고 있어, 법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데이터센터를 건축물의 용도상 별도의 용도로 구분하고, 데이터센터가 주거환경·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인근 주민 대상 설명회**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2항제25호의2, 제11조제4항제1호의2, 같은 조 제13항·제14항 및 제19조제8항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2026-10-30 발의

현행법은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전용주거지역 등 일부 주거지역에 한정하여 데이터센터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준공업지역 등 주거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 오피스텔 등 실질적 주거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경우 전자파·소음·발열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와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대해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준공업지역 내 주거 복합지역 등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까지 확대하여 설치 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76조제7항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2026-10-30 발의

인공지능은 교통, 안전, 환경 등 도시의 주요 기능 전반에 적용되어 도시문제를 사전에 진단·예측하고, 도시서비스를 지능화·최적화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편의와 도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 발전하고 있음.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인프라 중심의 스마트도시를 도시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 전략 차원의 시범도시에 다양한 인공지능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종합적으로 실증하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이 집약된 도시 선도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과 적극적인 규제 해소가 요구됨

이에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스마트도시의 형태로서 도시지능센터를 기반시설로 갖춘 인공지능도시의 개념을 신설하고, 스마트도시 운영의 근간이 되는 도시데이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도시데이터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추진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세계적인 인공지능도시 선도모델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특화시범도시의 지정 근거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특히 **도시지능센터와 도시데이터 특례구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시스템 기반의 자율적 도시 운영, 자율주행차·드론 등 첨단모빌리티와 로봇을 활용한 시민 체감형 서비스의 개발·운영, 혁신적인 도시공간 조성 등에 필요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11/2(월) 14:00	-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정무위	전체회의	11/5(목) 14:00	- 2027년도 예산안 상정
재경위	조세소위	11/2(월) 11:00	- 법안심사
과방위	전체회의	11/6(금) 10:00	- 2027년도 예산안 상정
문체위	전체회의	11/5(목) 10:00	- 2027년도 예산안 상정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 법안소위	11/3(화) 10:00	- 법안심사
	전체회의	11/5(목) 10:00	- 2027년도 예산안 상정
예결위	전체회의	11/4(수) 10:00	- 2027년도 예산안 심사(종합정책질의)
		11/5(목) 10:00	- 2027년도 예산안 심사(종합정책질의)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1/2(월) 09:00	**AI 시대, 미래를 여는 텍스트의 힘**	김재원·윤후덕 의원실 등	의원회관 11간담회의실
	11/2(월) 10:00	**디지털헬스케어법 정부대안 무엇이 문제인가**	전종덕·김선민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11/2(월) 10:00	**온라인 금융광고 신뢰 확보**	박상혁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11/2(월) 14:00	**사용자성 확대 이어 근로자 추정제 타당한가 : 노란봉투법 시즌2**	박수민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11/2(월) 14:00	**코인 엔소더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AI 시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박민규·민병덕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1/3(화) 09:30	**제4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민병덕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강당
	11/3(화) 14:00	**AI 대전환과 마리나산업 고도화 방안**	조경태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1/4(수) 10:00	**반환경보조금 발굴 제안 및 개혁과제 세미나**	김기현 의원실	의원회관 4간담회의실
	11/4(수) 10:30	**청년기본자산 플랜 토론회**	박주민 의원실	의원회관 306호
	11/4(수) 14:00	**냉매 온실가스 전환 어디까지 왔나 : 키갈리 개정서 10주년**	서왕진·차규근 의원실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
	11/5(목) 10:00	**지속 가능한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방안**	김성원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5(목) 14:00	**에너지 기본권 강화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서왕진 의원실	의원회관 11간담회의실
자료집 등	11/2(월)	**「금주의 보고서」 제2026-40호(통권 제72호)**	국회도서관	
	11/4(수)	**「금주의 서평」 제2026-42호(통권 제801호)**		
	11/5(목)	**「금주의 World Law」 제2026-42호(통권 제42호)**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5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10/26(월)	「Data+」 제2026-17호(통권 제41호)	국회도서관	
	10/28(수)	「금주의 서평」 제2026-41호(통권 제800호)		
	10/28(수)	「최신외국정책정보」 제2026-13호(통권 제37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0/26(월)	방송통신(TMT)	공정위, 「인공지능(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안) 의견청취 실시
10/26(월)	국방획득/ 방위산업	군사기밀 관련 압수수색, 방산기업은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군사기밀 등 관련 사건의 압수수색 대응 및 실무적 시사점-
10/27(화)	건설/부동산	분양형 토지신탁사업의 공사 중단으로 위탁자가 신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및 16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탁사를 대리하여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한 사례
10/27(화)	건설/부동산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지급책임이 제한된 판결에 기한 부동산신탁회사 상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사건에서, 즉시항고를 통해 제1심의 등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10/27(화)	건설/부동산	세종 건설클레임센터 Monthly Insight 10월호
10/27(화)	중국	'차이나 이노베이션'의 작동원리와 한국 기업을 위한 시사점
10/28(수)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기업지배구조 제도·규제 동향 MONTHLY
10/29(목)	형사	방위산업기술·군사기밀 유출 수사 사건에서 구속영장 기각 및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고, 증거은닉 혐의에 대하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
10/29(목)	지식재산권	실시간 스트리밍 플랫폼의 해외 음악저작권 침해 관련 국내 저작권 관리단체의 소송적격 및 배상책임을 부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10/29(목)	환경	통합허가 대상업종 확대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
10/30(금)	건설/부동산	월간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10/30(금)	금융	월간 기업·금융분쟁 뉴스레터
10/30(금)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10. 14. - 2026. 10. 27.)
10/30(금)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10/30(금)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따른 위임만으로는 '5% 룰'상 공동보유자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어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남형기 | 고문

프로필보기



윤형중 | 고문

프로필보기



김건훈 | 수석전문위원

프로필보기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이승상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